

이용계약에관한사항

참사랑복지요양센터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참사랑복지요양센터(이하 “기관”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증진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 2장 운영개요

제3조(사업 목적)

본 기관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며 더 나아가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복지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명칭)

본 기관은 “참사랑복지요양센터” 로 칭한다.

제5조(소재지)

기관의 소재지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393번길283에 위치한다.

제6조(사업의 종류 및 기능) 이 사업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인지/정서/가사.일상생활지원)
2. 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 차량 또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제 3 장 요양급여범위

제7조(급여규정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노인 및 그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서비스 제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장기요양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규정】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기준 2. 운영규정”
2.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명시) 동법 제17조(근로조건명시),
동법 제34조 (퇴직급여제도), 동법제43조 (임금지급),
동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등의 관련규정

【운영목적】 본 기관은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제 8조 (운영규정 기본 준수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별표 5)을 준수)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이용자 모집 방법등에 관한 사항
-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5)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7) 인력관리규정에 관한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 (8)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 (9) 직원의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예방, 건강검진 등
- (11)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급여대상)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분을 대상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제공한다.

제10조(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기준)

1.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정점수가 95점)
2.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정점수가 75~ 95점)
3.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정점수가 53~75점)
4. 4등급 : 자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제11조(급여범위 게시) 기관은 시설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정
2. 종사자 근무체계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
종사자 윤리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6.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제12조(급여범위) 장기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급여범위를 급여항목과 비 급여항목으로 구분되며, 급여항목은 보험에서 급여되나, 비 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항목)

- 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②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③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14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2)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모집방법

- (1) 관할지역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 시설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도록 한다.
- (2) 월 정기적인 각종 언론의 홍보 및 홈페이지를 이용을 통해 모집한다.
- (3)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방문요양/목욕 사업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 (5)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등)와 경로당 방문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 (6)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7)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감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①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 계약기간

-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 ③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
- 마. 매월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수급자 가정에 제공한다.

- 월이용료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40%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과 같다. 상기 재이하 “갑” , “을” 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의무	①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준수사항

-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할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 7. 어르신인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4 장 요양급여비용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규정

제1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4) 이용료는 장기요양 등급별비용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 비용이다.
- 5) 비용변경의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전에 가족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제17조 [방문요양/목욕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방문목욕

5. 요양보호사2인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목욕차량/이동식욕조/목욕의자등 이용가능)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제공한다.

7.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8.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9.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비용의 부담

[1]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7.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3]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